



문서번호 : 23-08-사무-0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의: 류다솔, dlyu@minbyun.or.kr, 070-5176-8164)

제 목 : [보도자료/유튜브영상링크 포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3. 8. 16.(수)

전송매수 : 총 12매

보 도 자 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2023. 8. 16.(수)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위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3.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4.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5.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7.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의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0cYfj9_9Tb0?feature=share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3. 8. 16.(수) 오전 11:00, 민변 대회의실

○ 프로그램

식순	내용	발언자
사회		하주희 사무총장(민변)
개회사		조영선 회장(민변)
발언 1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헌법소원 참가 이유 1	김은아 대표청구인(제주 해녀)
발언 2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헌법소원 참가 이유 2	김종식 상임부회장 (전국어민회총연맹)
영상상영	제주불레낭개다이브팀 수중 캠페인 영상	
발언 3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와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	김영희 변호사(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
발언 4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소리 변호사(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발언 5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대상	이예지 변호사(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발언 6	오염수 해양투기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	김두나 변호사(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발언 7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법적 문제 및	김종우 변호사(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국가의 의무	헌법소원 대리인단)
발언 8	헌법소원 청구 운동을 통한 기대	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 (일본방사성오염수저지공동행동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첨부 1. 대표청구인 김은아 해녀 사진자료 및 발언영상
- 첨부 2. 제주불레낭개다이브팀 수중 캠페인 사진자료 및 영상
- 첨부 3. 개회사 - 조영선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 4. 발언문 - 김종식 상임부회장(전국어민회총연맹)
- 첨부 5. 발언문 - 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사무총장
(일본방사성오염수저지공동행동 / 환경운동연합)
- 별첨 1. [헌법소원 심판청구 개요](#)
- 별첨 2. [기자회견 발제자료](#)
- 별첨 3. [기자회견 현장 사진자료](#)

2023. 8.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첨부 1] 대표청구인 김은아 해녀 사진자료 및 발언영상

- 대표청구인 김은아 해녀 사진자료



- 대표청구인 김은아 해녀 발언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pjul00fRewZfQ55frOy_svAEUnctgiQj/view?usp=sharing

[첨부 2] 제주불레낭개다이브팀 수중 캠페인 사진자료 및 영상

- 제주불레낭개다이브팀 수중 캠페인 사진자료



- 제주불레낭개다이브팀 수중 캠페인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kQqSk95i-7OXBPEtmZQ2vi5pAzsAllUG/view?usp=sharing>

[첨부 3] 개회사 - 조영선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부작위/작위
헌법소원 2023.8.16.

오늘 우리는 헌법 제35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한 대한민국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각부 장관 등을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4만여명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고발합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①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위협에 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마실 수 있다면서 강변하는가 하면, 어떤 국회의원은 수산시장에서 수족 물을 손으로 떠 마시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아동이나 임산부에게는 같은 양이라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알파선이나 베타선같이 인체 내부에서 주된 피폭이 발생하는 입자들은 아주 적은 양(베크렐)만으로도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체르노빌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 중에서 일본정부도 ALPS로도 전혀 걸러낼 수 없다고 밝힌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모두 내부피폭을 통해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과학계의 증언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2023. 7. 7.자 한국원자력기술원(KINS) 검토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도 없이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함부로 '안전하다'고 단정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위 KINS 검토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2023. 5.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렷이 잡힌 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자체를 외면한 것은 의도적인 배제이고 철저한 날조입니다.

KINS 검토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여기에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는 점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큼니다. 특히, 정부가 절대적 신뢰를 하고 있는 IAEA 종합보고서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수 없다고 스스로 도입부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신뢰할수 없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을 위반함으로써. 장래적으로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러시아, 미국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원전 마피아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런던협약을 위반하면서 경비를 아끼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류가 가져올 위험이 무엇인지,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야 합니다. 안 보인다고 오염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무모한 일본정부의 무단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변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무능, 부작위하는 윤석열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직접 피해자인 해녀, 염전 어민, 고기 잡는 어부, 가두리 양식장, 수산물을 먹는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4만명에 이르는 청구인이 모집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고래도 참여합니다.

범국민적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헌법소원에 법리를 개발하고 준비해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 김영희 변호사님을 비롯한 변호사님들, 사무처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첨부 4] 발언문 - 김종식 상임부회장 (전국어민회총연맹)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 김종식입니다.

우리 어업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공론화 되기 시작하면서 12년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는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들로 부터 불안감을 시작으로 풍평피해가 시작되어,수산물 가격 하락은 물론이며,소비가 현저하게 떨어져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도쿄전력에서 검증한 보고서 자료를 IAEA가 검토만 하고 그것을 IAEA는 신뢰한다고 하여 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하여서 사실상 해양투기를 사실상 인정해준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뒤에 밝혀진 사실은 IAEA는 보고서에 대해 책임이 없고 도쿄전력이 작성한 것을 신뢰했을 뿐이며 해양투기를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일본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해양투기를 목적에 두고 이 와같은 우리 어업인 까지 피해를 주고있다는 것에 우리 전국어민회총연맹 에서는 억울하고 분노함을 참을수 없어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업인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폐업이 속출해나가고 있으며 나이들이 많아서 육지로 나가서 새로운 일자리 찾아서 할수있는 일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부디 저희 어업인 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종식

**[첨부 5] 발언문 - 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사무총장
(일본방사성오염수저지공동행동 / 환경운동연합)**

헌법소원 청구 운동을 통한 기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력,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볼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